공직선거법위반

[대법원, 2008.9.11, 2008도5178]

【판시사항】

[1]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· 도화의 배부 · 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대상자 특정의 정도

[2]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‘ 위장전입, 땅 투기, 탈세, 주가조작 ’ 이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,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· 도화의 배부 · 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[1]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93조 제1항,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· 도화의 배부 · 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 · 추천 · 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,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,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,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, 문구의 연결방법,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,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,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 · 추천 · 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.

[2]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‘ 위장전입, 땅 투기, 탈세, 주가조작 ’ 이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, 그러한 표현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,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상자가 명백히 특정되므로,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· 도화의 배부 · 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[1]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, 제255조 제2항 제5호

[2]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, 제251조, 제255조 제2항 제5호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상 고 인】 피고인
【원심판결】 부산고법 2008. 6. 4. 선고 2008노233 판결
【주문】
】 상고를 기각한다.
【이유】
】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,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· 도화의 배부 · 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 · 추천 · 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,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,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,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, 문구의 연결방법,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,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 · 추천 · 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.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‘ 네이버 ’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시한 글들 중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, 4, 12번 기재 게시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한 ‘ 위장전입, 땅 투기, 탈세, 주가조작 ’ 이라는 문구는 이명박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방의 대상이자 반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게시물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255조 제2항 제5호, 제93조 제1항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· 도화의 배부 · 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.
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위 표현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,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위 표현이 이명박 후보자를 특정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,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후보자비방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있어서 대상자의 특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.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대법관 안대희(재판장) 김영란 이홍훈(주심)